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126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05.1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07.06]

www.공기수비대.com

air-guard@naver.com

공기수비대 정보공개서

공기수비대(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공기수비대(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1층 110호(구로동, 벽산디지털밸리3차)

담당부서 : 가맹사업본부, Tel : 1566-8813, 02-851-3900 / FAX: 050-4323-519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5
2. 특수 관계인의 일반정보	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6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6
5. 최근 3개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8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8
7. 바로 전 사업년도 말 임직원 수	9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9

II. 가맹본부의 공기수비대 가맹사업 현황

1. 공기수비대를 시작한 날	10
2. 공기수비대 연혁	10
3. 공기수비대 업종	10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10
5. 최근 3년간 공기수비대 가맹점 수	11
6. 본 브랜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11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11
8. 공기수비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12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13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3
11. 가맹금 예치	13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14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15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15
3. 형(刑)의 선고	15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6
2. 영업 중의 부담	19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2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3
---------------------	----

2. 거래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24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24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25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27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28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31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32
9. 광고 및 판촉 활동	34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34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37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38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39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9
3. 경영활동 자문	39
4. 신용 제공 등 내역	39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39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40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40
3. 교육·훈련의 주체	40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4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41
2.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41
3. 바로 전 사업년도 직영점의 연간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41

별첨[1] 물품의 상세 내역	42
별첨[2] 가맹점 관리표	44
별첨[3]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	45
별첨[4] 가맹금 예치신청서	46
별첨[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47
별첨[6] 가맹희망자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55
별첨[7] 공기수비대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서(가맹점사업자 용/ 가맹본부 용)	56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공기수비대(주)	공기수비대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 88, 5층 에이514호(향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0.06.08	2020.06.15	천인철	1566-8813	050)4323-5191
	법인등록번호	110111-7512117	사업자등록번호	751-86-0173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동안 특수 관계인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 름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천인철	공기수비대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 88, 5층 에이514호(향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천인철	1566-8813	050)4323-5191
관 계	이 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	홍진세	공기수비대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 88, 5층 에이514호(향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천인철	1566-8813	050)4323-5191
관 계	이 름	영업표지	주 소		
이사	김오숙	공기수비대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 88, 5층 에이514호(향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천인철	1566-8813	050)4323-519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공기수비대” 라함)의 내용

1)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공기수비대	새집증후군 제거시공
상 호	공기수비대 000지부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40-1393285호
그 밖의 영업표지		등록번호 : 제40-1393286호 광고 및 홍보용

2) 공기수비대 브랜드 소개

공기수비대는 환경부가 권장하고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새집증후군 제거방법인 “베이크아웃”을 진화 발전시킨 국내 유일 “습식베이크아웃” 시공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새집증후군 제거시공 전문브랜드입니다.

공기수비대(주)는 “공기수비대” 새집증후군 제거시공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가맹본부 형태의 주식회사 법인입니다. 공기수비대(주)는 2020년 6월 나눔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계약(독점) 체결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2013년 설립된 나눔협동조합이 획득한 다음과 같은 개발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 2013. 12 중앙대학교 산학협력으로 에어테라피 세균번식 억제 및 살균작용 연구용역(정부지원)
- 2015. 06 닥터.에어테라피 특허등록(송침유를 함유한 공기청정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2016. 11 습식베이크아웃 특허등록(습식베이크아웃방식을 이용한 실내공기 정화방법)

- 2018. 09 공기수비대 & DR.AIRTHERAPY 상표등록
- 2014 ~ 2020 각종 특허등록증, 시헌성적서 및 수상실적 등 라이선스 획득.
- 2021 ~, 전국 프랜차이즈 & 전국시공 개시

현재 국내에서 보편화되고 널리 알려진 새집증후군 제거방식은 “오존시공”과 “차페/코팅시공법”입니다.

특히 “차페/코팅시공”은 대부분의 업체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MDF 절단면을 차페제로 발라서 유해물질을 못나오게 막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해물질을 원천 차단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존시공”은 대형 오존기를 실내에 설치하여 당일 오후부터 익일 오전까지 가동(1박2일)하여 유해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운영하지만 “실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건강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고농도의 오존이 필요하지만 남겨진 화학 부산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도(KBS뉴스)된 바 있으며, 해외에서는 오존기 사용 자체를 금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또한 입주청소 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피톤치드”를 뿌리는 시공은 배출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여 일시적으로 냄새를 없앨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인된 새집증후군 제거방법, 환경부가 권장하는 새집증후군 제거방법은 “베이킹아웃”입니다.

베이킹아웃 시공은 실내온도를 40도 이상으로 높여(Bake; 굽다) 유해물질을 강제로 배출(Out; 내보낸다)하는 방식이며 공기수비대는 유해물질 제거효과가 있는 용제를 뿌리고 가습하는 시공(습식)을 열풍(베이킹)시공과 함께 병행하여 기존 건식 방식의 베이킹아웃보다 많은 유해물질을 단시간에 강제 배출시키는 특허시공입니다.

3). 공기수비대 시공장점

1	국내유일 특허기술	환경부 권장 “베이킹아웃”을 강화한 “ 습식베이킹아웃 ”기술은 모방할 수 없는 국내 유일한 기술입니다. (특허 10-1682649호)
2	유해물질 근원제거	타 업체가 시공하는 막거나 칠하는 차페, 코팅방식은 No/ 한번 시공으로 유해물질을 약 90% 제거하는 유일한 시공법입니다.
3	시공효과 확인가능	시공 전과 시공 후 직접 체감하는 느낌이 확실하고 시공 전과 시공 후 오염도 측정결과도 100% 공개합니다.
4	특허받은 천연용액	사용하는 용액 닥터.에어테라피 는 피부자극, 탈취, 항균테스트를 완벽 통과한 고품질의 실내공기치료제입니다. (특허 10-1527513)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91,120	47,715	143,405	955,301	77,090	76,114
2022년	251,954	87,219	164,735	1,078,095	43,703	21,330
2023년	351,286	147,489	203,797	1,586,957	49,438	64,062

※ 상기 재무상황 확인을 위해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별첨5])하였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도 당사의 총매출액은 ₩1,586,957천원으로서 당사는 가맹사업 외 도,소매업도 운영하고 있으며 총매출액 중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등의 매출은 ₩521,173천원(32.9%), 환경관련엔지니어링 본사매출 ₩1,062,001천원(66.9%), 기타도,소매 매출 ₩3,783천원(0.2%)의 비율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은 ₩1,583,174천원으로서 전체 매출액의 99.8%로 추정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임원	천인철	대 표	2015.04. ~ 2019.07	전자조달연구원 이사	사업기획
			2019.08. ~ 2021.02	지블록홀딩스 이사	사업기획
			2020.06. ~ 현재	공기수비대(주) 대표	경영총괄
"	홍진세	이 사	2020.06. ~ 현재	공기수비대(주) 이사	시공업무
"	김오숙	이 사	2020.06. ~ 현재	공기수비대(주) 이사	영업,고객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1	8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공기수비대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 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 유 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공기수비대 (서비스표권)	상표사용 및 대가 수수	등 록 (2018.09.03)	제40-1393285호 제40-1393286호	나눔협동조합	2028.09.03 (2024.05.31)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공기수비대 가맹사업 현황

1. 공기수비대 를 시작한 날 : 2021년 01월 0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20년 08월 01일)

2. 공기수비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공기수비대(주)	공기수비대	천인철	2021.01.01. ~ 현재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88, A514동 (항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3. 공기수비대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공기수비대	기타서비스	새집증후군 시공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공기수비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 12. 31.			2022. 12. 31.			2023.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0	19	1	23	22	1	27	25	2
서울	4	3	1	3	2	1	2	1	1
부산	2	2	-	3	3	-	3	3	-
대구	1	1	-	1	1	-	2	1	1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1	1	-
경기	7	7	-	9	9	-	11	11	-
강원	-	-	-	1	1	-	2	2	-
충북	-	-	-	-	-	-	-	-	-
충남	2	2	-	2	2	-	2	2	-
전북	-	-	-	-	-	-	-	-	-

전남	1	1	-	1	1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1	1	-	1	1	-	1	1	-
제주	1	1	-	1	1	-	1	1	-

5. 최근 3년간 공기수비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19	-	-	-	19
2022	19	4	1	0	0	22
2023	22	4	1	0	0	25

6. 공기수비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공기수비대” 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평균 매 출 액	면 적 3.3㎡당	상 한	면 적 3.3㎡당	하 한	면 적 3.3㎡당	
전체	25	119,410	-	274,000	-	30,000	-	23개 산출
서울	1	-	-	-	-	-	-	2개 미만
부산	3	163,333	-	205,000	-	95,000	-	
대구	1	-	-	-	-	-	-	2개 미만
인천	-	-	-	-	-	-	-	
광주	-	-	-	-	-	-	-	
대전	1	-	-	-	-	-	-	2개 미만
울산	-	-	-	-	-	-	-	
세종	1	-	-		-	-	-	2개 미만

경기	11	130,333	-	274,000	-	50,000	-	2개 제외
강원	2	60,437	-	90,874	-	30,000	-	-
충북	-	-	-	-	-	-	-	-
충남	2	90,000	-	110,000	-	70,000	-	-
전북	-	-	-	-	-	-	-	-
전남	1	-	-	-	-	-	-	2개미만
경북	-	-	-	-	-	-	-	-
경남	1	-	-	-	-	-	-	2개 미만
제주	1	-	-	-	-	-	-	2개 미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공급액 × 추정비율(12.8)]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의 원가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부재료 등의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약 7% ~ 8%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역산하여 가맹점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재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가맹점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은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가맹점 영업 6개월 미만 또는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가맹점은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25개 매장 중 2개 매장(경기 2개)을 제외한 가맹점 23개의 평균 매출액 산정자료입니다. 또한 당사의 가맹점은 현재 무점포로 운영 중인바, 면적3.3㎡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산출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별 가맹점 2개미만인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공기수비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공기수비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25개	737일(2년 0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공기수비대” 가맹점 관리를 위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공기수비대” 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광고 및 판촉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 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 계	-	-	51,951	51,951	-	-
광 고	(비공개)	연중	44,427	44,427	-	(비공개)
판 촉	(비공개)	연중	7,524	7,524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1)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	02)867-0341

※ 가맹금 예치신청서는 별첨[4]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 가맹금 예치에 대한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즉시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기업은행에 가맹금을 예치 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기업은행의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 후 은행이 제공하는 가맹금 예치증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치증서는 입금하신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 시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확인을 위한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예치 가맹금 지급 동의서)는 별첨[3]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공기수비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 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차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 증 금	가맹본부	보증보험 가입	확정 금액
기 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금 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가맹비	11,000	계약체결 즉시	영업 개시 이전 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 및 개점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 제외	반환 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영업지원비	1,100				
홍보물품비	1,100				
교육비	3,300	계약체결 즉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후 반환
총 계	16,500				

2) 당사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보험을 가입 후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보험	보증보험증권 (5,000)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 후 가맹본부에 제출	계속 가맹금 및 상품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채무불이행 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담보금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미이행 시 보험사에 청구
총계	보증보험증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 맹 비	11,000
영업지원비	1,100
홍보물품비	1,100
교 육 비	3,300
합 계	16,5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1]물품의 상세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면 적 3.3㎡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필수 설비	시공장비	(비공개)	3,150	-	별도 협의	상품 미공급 시	최소 기본 장비 (직구매)
	측정장비	(비공개)	350	-	"	"	공기질측정기 등
초도 물품		가맹본부	1,000	-	"	"	가습용제 등
기타 비용		"	500	-	"	"	차량 매핑 등
총 계			5,000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필수설비 등의 현시세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차량 매핑, 무선카드단말기, 영업책임배상보험 등입니다. 귀하의 차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차량구입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은 실내환경 전문설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운영하는 무점포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매장 설치는 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계약서 제13조에 의거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영업지역을 선정합니다. 2.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에 대하여 시장특성, 고객 대상의 분포 및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현장실습 5회 이상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2.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점주 직접 교육 가능	호흡기나 더위에 약한 체질은 채용 불가 (아래 ※표 참조)

※ 본 계약은 1인 창업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확장 시 가맹본부와의 추가 계약으로 지부운영권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11조 제4항 영업제한에 별다른 구속이 없음을 달리 해석하여 종업원 수를 늘려가는 것은 본 계약의 취지와 맞지 않기에 종업원 수를 가맹점사업자 외 1인으로 제한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41조 제1항)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공기수비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1] 물품의 상세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자체조달의 경우 품질, 수량 등에 대하여는 가맹본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최초 가맹금은 가맹계약 체결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수설비 및 물품대금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광고 및 판촉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 고
로열티	가맹본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3개월에 해당하는 월부터 매월 33만원	매월 10일	-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영업증개수수료	가맹본부	시공금액의 15% (로열티 지급시 면제)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10일	-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가맹본부에 접수된 시공예약 건을 이관 받은 가맹점사업자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직전분기 총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광고비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부가 50%, 가맹점사업자가 분할하여 50% 분담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로 분담	판촉비 통지 서도달후 7일 이내	-	후불로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 30% 이상 반대 시 미 실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수시교육 및 특별교육 :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 미 실시 하는 경우	교육 실시 후	1. 수시교육은 가맹본부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실시 2. 특별교육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요 시 실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미지급 금액에 대해 년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바로 전 사업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OEM방식으로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의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한 영업실적 6개월 미만 가맹점과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가맹점은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오백만 원(₩5,000,000)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갱신 및 영업지역 변경 요구에 관한사항	계약조항
○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재계약 및 연장을 포함한다.)시 가맹본부에게 가맹비 오백만 원(₩ 5,000,000)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계약갱신(재계약 및 연장을 포함한다.)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나. 해당 상권의 신규 입주물량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라. 경쟁 영업표지 입점 등 사유 마.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영업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제3항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서면에 의한 양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계약위반, 일방적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공기수비대”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으나 사전에 당사에 통지 후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및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가맹점 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종료와 조치에 관한사항	계약조항
○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로 종료되었을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 제1항
○ 본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조치를 실행하고 가맹본부에게 3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가맹점사업자가 즉시 이러한 조치를 기일 안에 실행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에 관해 이미지를 손상시키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간 만료 후 가맹본부가 이러한 조치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별도 부담으로 한다. 가. 공기수비대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도 사용하지 않을 것 나. 노하우 사용을 중지할 것 다. 영업지원 품목 일체(PT자료, 각종 양식, 매뉴얼, 기타 가맹본부로부터 대여 받았거나 제공받은 문서, 도면, 기타 도서 전부)를 모든 사본과 함께 가맹본부에 반환하거나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분할 것	제45조 제2항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공기수비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기수비대”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당사가 공급하는 제품과 품질이 동일하다는 서면입증을 통해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공기수비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공기수비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공기수비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별첨[1]물품의 상세내역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시정요구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일반고객	별첨[1]물품의 상세내역 2.물품 참조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동종업계			3회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1]물품의 상세내역 3)서비스 메뉴 참조		별도 공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실내환경 서비스사업	공기수비대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인구 30만명당 1개 영업지역 설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한시적으로 타지역 영업을 제한합니다.

가. 가맹본부가 참여 가능한 공식행사(입주박람회 등)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속한 입주 아파트일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참여 여부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며,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참여를 결정하였을 경우 행사 참여결정일로부터 입주기간까지 가맹본부 및 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참여를 거부할 경우 우선권은 소멸되며 행사에 참여한 가맹본부 또는 타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나.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 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기 항에 준하는 비용을 들여 프로모션 행사진행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고지하였을 경우 프로모션 기간 동안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기간은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 영업권을 보장받는 기간 동안 타 가맹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예약 받은 시공 건이 있다면 영업권을 보장받은 가맹사업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받은 가맹사업자는 시공금액의 15%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상호간에 합의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예약이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 최초 계약을 우선한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공기수비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지부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해당사항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옥션 외	www.auction.co.kr	용제	온라인 전용
홈쇼핑	공기수비대	www.공기수비대.com	용제	당사 쇼핑몰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72%	28%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	-

※ 당사는 각 채널별 전용상품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공동으로 운영중입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공기수비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또한 이 계약의 갱신 시(재계약 및 연장을 포함한다)에는 가맹비 오백만 원(₩ 5,000,000)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관한 사항	계약조항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 제2항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종업원 인원 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계약조항
1. 기업 로고나 브랜드 로고를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지 않거나 당사의 상호, 당사가 사용할 것을 공지한 상호, 당사가 사용하였던 상호를 당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제43조 제1항
2. 당사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 변경, 폐지하였을 때, 기존의 기업 로고 및 브랜드 로고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월(月)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경우	
4. 회원관리 또는 매뉴얼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당사 마케팅 어드바이저의 가맹점사업자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당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	
6.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행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 판촉활동에 동참을 거부하거나 당사와 합의한 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고객의 컴플레인 발생 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와 협의 없이 판매가격을 정하여 고객에게 반복적인 컴플레인이 제기되는 경우	
9. 로열티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사항	계약조항
1.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3조 제2항
2.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재계약 및 연장을 포함한다)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운영권의 취득·인수에 있어서 환매를 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계약조항
1.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2.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승인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제39조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보증금 및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신규가맹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 하게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 속	상속인 사후통지 시 (직계가족에 한함)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서면으로 승인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해당사항없음	-	-	-

※상속 및 대리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공기수비대”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금지 의무	비 고
실내환경 서비스사업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공기수비대의 영업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의 존속기간 및 그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 브랜드 명 등을 사용하여 공기수비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계약서 제48조 제2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공기수비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가맹점사업자 시공 스케줄에 따라 연중무휴 개점함		가맹계약서 제32조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일정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 관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 직접 근무 여부	비 고
무점포 1인 사업이 원칙임	영업을 위해 상주 해야함	가맹계약서 제41조 제1항 (아래 참조)

▶ 본 계약은 1인 창업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확장 시 가맹본부와의 추가 계약으로 지부운영권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11조 제4항 영업제한에 별다른 구속이 없음을 달리 해석하여 종업원 수를 늘려가는 것은 본 계약의 취지와 맞지 않기에 종업원 수를 가맹점사업자 외 1인으로 제한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공기수비대 가맹사업은 무점포 사업으로서 영업장 관리 감독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 및 브랜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수시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감독기준은 별첨[2] 가맹점 관리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구 분	광 고 성 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통상적인 홍보광고	전액부담	없음	광고 계획 공고(1개월 이 내 서면동의 여부 통지)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 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7일 이내 입금 → 광고진행	대중매체 광고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홍보광고	홍보 광고 50%	홍보 광고50%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 행사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 품의 할인비용, 직접 제공하는 경 품, 기념품, 팸플렛, 전단, 홍보물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판촉활동을 위한 통일적인 홍보물 등의 디자인, 시안 등의 제작비용 등은 가맹본부가 부담.			행사 계획 공고(1개월 이 내 서면동의 여부 통지)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 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 시 전체 적용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사업자간의 개별분담액은 광고시행 직전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단위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	계약조항
○ 가맹점사업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가맹사업 이미지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광고 및 홍보의 내용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제7항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제4항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

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	계약조항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과정 및 점포의 경영상 알게 된 공기수비대의 영업상 비밀을 계약기간 및 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가맹본부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공기수비대의 영업과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 계약의 존속기간 및 그 이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 브랜드 명 등을 사용하여 공기수비대(주)가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운영매뉴얼 이외의 가맹본부로부터 습득한 교육 및 세미나 자료, 모든 매뉴얼, 업무상 공문, 전산시스템, 회계자료, 가격구성 등의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화일 등을 제3자에게 공개(인쇄, 복사, 대여, 누설 등)하거나,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또는 국가기관의 명령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에 통보하여 적절한 비밀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는 본조 제1항의 의무를 계약 종료한 후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제48조의 영업상 비밀을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하여 계약 종료 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제3항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계약조항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내 제48조 및 제49조(계약기간 내 및 종료 후 비밀유지 의무, 동종영업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방적인 폐점, 일반적으로 가맹본부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금 삼천삼백만원(₩33,000,000/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침해일 익일부터 위약별로 1일 금 삼십삼만원 (₩330,000 / VAT포함) 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46조 제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46조 제4항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위약금과는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6조 제5항
○ 아래 각 호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제14조 가맹비의 30%를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납입한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업운영을 저해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1항의 가맹본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9조 제2항의 마케팅 어드바이저의 매장이나 현장 출입을 막는 경우	제47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음의 일정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25일 내외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25(1일)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	D-25~24(2일)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10~9(2일)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9(1일)	
가맹금 예치	- 예치은행에 가맹금 예치	D-9(1일)	
교육 실시	- 시공교육 및 운영교육 실시	D-8~3(5일)	
차량도색	- 업무차량 홍보 영업표지 삽입	D-3(1일)	
설비인도	- 시공 영업장비 및 물품 인도	D-1(1일)	
영업 개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합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계약조항
○ 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1조 제1항
○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1조 제2항
○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제3항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무점포 1인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어 점포환경개선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현재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계약조항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단독 또는 복수의 마케팅어드바이저를 통하여 아래 각 호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가. 개업에 관한 모든 업무의 지도 및 원조 나. 시공 및 장비사용 현장 지도업무 다. 행사 및 광고 선전 활동에 관한 지도 및 원조 라. 고객관리, 재고관리업무에 관한 지도 마. 신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략 및 전술지도 사. 가맹점사업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전항의 경영 지도를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3. 가맹본부는 본조 제2항에 의한 경우 경영지도 결과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제시 하여야 한다. 4. 가맹본부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품구성과 가격책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제19조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공기수비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조기 안정화지원	로열티 면제	매출실적이 저조한 경우	가맹계약일로부터 6개월	로열티 대신 15% 중개수수료로 대체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공기수비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공기수비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 고
신규 교육	5일(영업시간 기준)	3,3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특별)교육	별도공지	실비	매년 필요 시 통지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자가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가맹점을 개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 예정일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42조 제2항 제바호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 0개월(741일)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548,384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였으며 영업기간 1년 미만은 연매출로 환산하였습니다.

별첨[1]

물품의 상세 내역

1) 운영설비 및 비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기 품목의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맹 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품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시공용제는 공기수비대에서만 사용하는 전용 용제로 타사 공급을 일체 금합니다.

3) 서비스 메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격은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권장가격입니다.

별첨 [2]

가맹점 관리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가맹점 영업개시 확인서

(예치 가맹금 지급 동의서)

브랜드명		공기수비대			
예치기관		(비공개)	예치금액		₩
가 맹 본 부	상 호	공기수비대(주)	가 맹 점 사 업 자	가맹점명	점
	대 표 자	천 인 철		대 표 자	
	사업자번호	751-86-01737		사업자번호	
가맹점 소재지					

가맹점사업자 본인은 202 년 월 일부로 가맹점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5조의8 제1항에 의거 상기 가맹본부에게 예치 가맹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가맹점사업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기업은행 _____ 귀하

별첨[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5.7>

가맹금 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	
	성명(대표자) :	
	주소(사무소) :	전화번호 :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 공기수비대(주) (공기수비대)	
	성명(대표자) : 천 인 철	
	주소(사무소) : 서울시 구로구 부광로 88, 5층 에이514호(항동, 구로에스케이브이원센터)	전화번호: 1566-8813

예치가맹금	₩ (금)
-------	--------

신청인의 계좌	
------------	--

가맹본부의 계좌	(비공개)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기업은행	지점장 귀하
------------------	------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6]

가맹희망자 지부예정지 인근 가맹점 현황

NO	가맹점명	대표자	연락처	점포 소재지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의 장래 지부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입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현황을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본부 : 공기수비대(주)
 대 표 : 천 인 철 (인)
 전화번호 : 1566 - 8813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화 02)6739-5500**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